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92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예지·백종헌·박덕흠

최수진 · 김소희 · 엄태영

송석준 · 서천호 · 김선교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기준의 완화)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건축기준의 완화) 의무
	인증시설이 아닌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제10조의2에 따른 예
	비인증을 신청하여 공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